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47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(주민)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, 특히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상위법령 미반영 사안을 반영·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안전취약계층’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8호)
- 나. 안전관리위원회 설치·기능 정비(안 제6조, 제7조)
- 다.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4조의2)
- 라. 재난안전용품 지급 및 시설개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명시(안 제54조의3)
- 마.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관한 위원회 사전 심의 규정(안 제55조의2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: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”을 “자연재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반활동”을 “모든 활동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 제3조의 제목 “(구의 책무)”를 “(구청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구는”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, “안전관리시책”을 “안전관리 시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안전관리시책”을 “안전관리 시책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·기능)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
2.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6.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사항의 심의
7. 제55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
8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”를 “포함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”로, “구성하되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”을 “30명 이내로”로, “사람이 된다”를 “사람으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”로, “위원장”을 “위원장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관할 구역”을 “관할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제9조제1항 중 “1회에 한정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경우 등”을 “경우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위원회 실무위원회)”를 “(안전관리실무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실무위원회의 위원장”을 각각 “실무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5항제3호 중 “관계기관간”을 “관계기관 간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새로운”을 “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새로운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통보 하여야”를 “통보하여야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구에 서울특별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제21조제7호 중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”를 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4호 중 “담당한다”를 “담당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지휘 감독하며”를 “지휘 · 감독하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주무하는”을 “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소속”을 “관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수습주무부서”를 “수습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대책본부운영”을 “대책본부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한다.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주관부서”를 “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소관”을 “담당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역주민”을 각각 “구민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단서 중 “구 관내”를 “관내”로, “자치단체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29조제4호 중 “주민”을 “구민”으로, “상담”을 “안전상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주민생활안전”을 “구민생활안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자문 또는

점검”을 “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 자문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3호 중 “경우 등”을 “경우”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5명이하”를 “5명 이하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 중 “대하여 자문”을 “자문”으로, “하고자 할”을 “요청할”로, “제출”을 “제공”으로 한다.

제36조를 삭제한다.

제39조 중 “안전업무담당팀장”을 “안전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한다.

제40조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3조의 제목 “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)”를 “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“긴급 안전점검”을 각각 “긴급안전점검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정밀 안전진단”을 “정밀안전진단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1항 중 “법 제38조의2”를 “법 제38조의2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종합계획”을 “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중 “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”를 “일상생활에서”로, “있을 경우”를 “있거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주민”을 “구민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관할 지역”을 “관할구역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중 “소관”을 “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 재난”을 “구 재난”으로 한다.

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
2.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

②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3세 미만의 어린이
2.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은 제5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4조의3(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) 구청장은 제5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
2.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·가스·전기 등의 시설개선
3.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
4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5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,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2(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)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,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
3. 재난취약 지역·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
4. 재난안전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5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56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<u>자연재난(미세먼지를 포함한다)</u>과 나목의 <u>사회재난</u>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대비”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<u>제반활동을</u>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·훈련, 매뉴얼 정비,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</p> <p>4. “대응”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, 응급조치, 긴급구조, 상황관리, 기관간의 협조·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<u>제반</u> 활동을 말한다.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자연재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모든 활동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모든</u> ----- -----.</p> <p>5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</u>을 말한다.</p>

제3조(구의 책무) ① 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

④ 구민은 구가 수립·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) 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, 그 밖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----- 안전관리시책-----

② 구청장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구민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 안전관리시책-----

제6조(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·기능)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6.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사항의 심의
7. 제55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
8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

<삭 제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

무의 협의·조정

5.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
6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

2. ~ 6. (생략)

7. 구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
8.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
----- 포함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----- 30명 이내로 -----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----- 위원장 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 관할구역 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.

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
----- 한 차례만 -----.

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

제12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④ (생략)

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2. (생략)

3.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

제13조(위원의 활용) 새로운 정책의 개발·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경우

제12조(안전관리실무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실무위원장 -----

-----.

③ ----- 실무위원장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관
계기관 간 -----

제13조(위원의 활용) 위원장 및 실무 위원장은 새로운 -----

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4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)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9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0조(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) 구

-----.

제14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범위 -----
--.

제16조(수당) -----

----- 범위 -----
-----.

-----.

제18조(회의결과의 통보) ① -----

----- 통보하여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위임규정) -----

-- 필요 -----
-----.

제20조(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) --

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1조(대책본부 기능)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6. (생략)
7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
8. (생략)

제22조(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)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, 총괄조정관, 지원협력관, 통제관, 담당관 및 실무반장을 둔다.

1. ~ 3. (생략)
4. 지원협력관은 행정국장이 되며,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
5.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관련 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, 각 실무반장을 지휘 감독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.

----- 서울특별시 -----

-----.

제21조(대책본부 기능) 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-- 담당한다.
5. -----

----- 지휘·감독하며 -----.

6.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,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.

7.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되 구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·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제23조(대책본부의 운영) ① (생략)

② 그 밖에 대책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대책본부회의”라 한다.)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,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(생략)

6. ----- 담당하는 -----

-----.

7. -----
----- 관계 -----

-----.

② ----- 수습담당부서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대책본부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대책본부 운영-----
-----.

제24조(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① -----

----- 한다-----
-----.

②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
보건소장

3. ~ 5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제26조(동원체계의 구축 등) ①·②
(생략)

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
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
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
· 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
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37조에 따
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
다.

④ (생략)

제27조(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
촉) ①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
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
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요원
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
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기
위하여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
다.

③ (생략)

제28조(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

① (생략)

2. ----- 담당부서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동원체계의 구축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담당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
촉) ① -----

----- 구민-----

② ----- 구민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29조(자문단의 기능)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~ 3. (생략)
4.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5. (생략)
6. 주민생활안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
7.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
제30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·2. (생략)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② -----

----- . -- 관내-----
----- 지방자치단체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자문단의 기능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주민-----
----- 안전상담
5. (현행과 같음)
6. 주민생활안전 -----

7. ----- 현장 안전점검
및 안전상담 등 자문-----

제30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-----

----- . -----

-----.

- 1.·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경우

등

제33조(소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34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·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6조(안전점검 및 상담실시)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9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재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.

제40조(수당 등 지급)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안전점검·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

제33조(소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5명 이하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--
----- 자문 -----
----- 요청할 -----

----- 제공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39조(간사와 서기) -----

----- 안전업무 담당 팀장-----
-.

제40조(수당 등 지급) -----

- 범위-----

급할 수 있다.

제43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)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,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4조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5조(재난위험요인의 신고)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

-----.

제43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) ① -----

----- 긴급안전점검 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긴급안전점검 -----

----- 정밀안전진단 -----

-----.

제44조(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) ① ----- 법 제38조의2제7항 -----

-----.

② ----- 재난 예보·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-----
-----.

제45조(재난위험요인의 신고) ① 일상생활에서 -----
----- 있거나 재

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, 긴급구조 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7조(대피소의 관리)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·정비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48조(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) 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52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달 받은 시장의 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

난위험요인을 발견한 사람은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대피소의 관리) ① -----
----- 주민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) ① -----
----- 관할구역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-----

----- 담당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구 재난 -----

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4조의2(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법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
2.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

②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3세 미만의 어린이
2.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은 제5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

<신 설>

제55조(재정지원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4조의3(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) 구청장은 제5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 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용품
2.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·가스·전기 등의 시설개선
3.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4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5조(재정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 음)

③ 제5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,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55조의2(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)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,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
3. 재난취약 지역·시설 등의 위험요소 제거 및 기능 회복
4. 재난안전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
5.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5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6조(시행규칙) -----
필요-----
--.